##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29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김태년 · 김한규 · 박희승

이훈기 • 김태선 • 김영배

박균택 · 염태영 · 박홍근

한민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함)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대가를 말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 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통 상 상·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송객(이하 "송객용역"이 라 함)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정확한 탈세 규모 및 경로 파악 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

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6조의11(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자"라 한다)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객용역거래계좌(이하 "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1. 관광사업자가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 2.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간에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 ② 관광사업자가 송객용역을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 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관광사업자가 송객용역을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

게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송객용 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관광사업자에게 입금하여야 하고,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 다.

- 1. 송객용역의 가액
-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④ 송객용역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 도 불구하고 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⑤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

및 공급받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해당 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⑦ 관할 세무서장은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 하여 징수한다.
- ⑧ 제3항에 따라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송객용역의 매출액이 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제3항에 따라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①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점사업자 또는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관광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송객용역거래계좌 사용대상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의 범위, 송객용역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세금계 산서 등의 작성·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매입자 납 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신 설&gt;</u>	개 정 안 제106조의11(송객용역에 대한 부 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자"라 한다)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객용역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광사업자가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다)을 공급하는 경우  2.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 사업자 간에 송객용역을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 ② 관광사업자가 송객용역을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관광사업자가 송객용역을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는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 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 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관광사업자에 게 입금하여야 하고,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1. 송객용역의 가액
-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

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④ 송객용역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50조에도 불구하고 송객용역거 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⑤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 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 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 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 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송객용역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송 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 우에는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 한 관광사업자 및 공급받은 다 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 업자에게 해당 송객용역 가액

- <u>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u> <u>수한다.</u>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액을 합금한 날(「부가가치세액을 하는 하는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8 제3항에 따라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 세점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 세액은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 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 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송객용역의 매출액이 송객용역

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 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 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3항에 따라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과과사업자 또는 며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 세점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 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 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

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 게 환급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 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객 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점사업자 또는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관광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송객용역거래계좌 사용대상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의 범위, 송객용역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 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 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